

주택조합 설립(또는 변경, 해산) 인가필증

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|
| 인가번호    |          |      |  |
| 조 합 명   |          |      |  |
| 대 표 자   |          | 생년월일 |  |
| 사무소 소재지 | (전화번호: ) |      |  |
| 조합원 수   |          | 주용도  |  |

「주택법」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(또는 변경, 해산)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 
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·군수·구청장

